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및 쟁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00
- 장 소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

- I .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II . 상법 개정 방안
- III .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I .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II . 상법 개정 방안
- III .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 추진 현황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의 일환

- 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②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③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④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주요 과제 (『5개년 계획』)

- 총수 일가 전횡 방지(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해외 계열사 관련 공시 확대 등)
- 사익 편취 근절(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상시 감시)
- 금산 분리(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관련)

■ 과제 ①: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제출(정부, 2020.8)

- ①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④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⑤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등

■ 과제 ②: 공정거래법(기업집단법제, 집행체계 등) 전부개정안 제출(정부, 2020.8)

- ①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②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③ (신규 지정 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④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금융보험사와 동일) 등

■ 과제 ③: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제출(정부, 2020.8)

- ① 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②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 점검 통한 건전성 관리, ④ 대표금융회사 통한 주요사항의 감독당국 보고 및 시장 공시, ④ 필요시 금융위의 명령 등 건전경영지도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공정경제 3법 외 기업지배구조 법제 개선 추진 현황

■ 과제 ④: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제출(정부, 2020.6)

- ① 임추위에 대표이사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금지, ②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 주총 설명 및 소집공고 기재, ③ 이사회의 다양성 요건 명시 및 소집공고 기재 의무화, ④ 최대주주 결격사유에 특경가법 위반 추가 등

■ 과제 ⑤: 상장회사법 제정안 제출(이용우의원 2020.8, 김병욱의원 2020.9)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국내 현황 (1/2)

■ 경영 감독 등에서 미흡한 이사회

-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부족과 그에 따른 시장의 신뢰 저하

■ 형해화된 주주총회

- 부족한 정보, 촉박한 일정 등 충실한 의결권 행사의 어려움
- 높은 내부지분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미흡 등으로 통과의례로 전락

■ 회사·주주간 대화 부족과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 저하

- 최대주주 일가의 위법행위 및 사회적 책임 관련 논란 등
- 주주와 회사 간 소통의 부족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국내 현황 (2/2)

■ 소유구조의 제약

- 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의 낮은 지분율 vs 계열사를 활용한 높은 내부지분율
- 높은 소유-지배 괴리, 이해상충 행위 발생 가능성 확대

■ 불투명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 (그간의 다각도의 제도 개선에도) 임원 선임, 경영 승계, 임원보상 등 공시의 불투명성
- (기관)주주와 기업 간 대화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투명경영

■ 책임 추궁의 어려움

- 주주총회 형식화로 인한 엄정한 임원 선임 곤란
- 주주소송(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등) 제기의 곤란함과 낮은 건수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국제 동향 (1/2)

▪ 국제 동향 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이 자리잡은 국제자본시장

- ESG 강조하는 책임투자 전략, 대화 중심 스튜어드십 코드 (영국, 일본, 미국 등 20개국) 확산
- COVID-19 극복에서도 적극적 대화와 활동 등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역할

▪ 국제 동향 ②: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 개정

- 실질주주 확인,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의결권 자문기관, 임원 보상, 특수관계인 거래 등 관련 개선 조치를 담은 EU Shareholder Right Directive 대폭 개정(2017)이 대표적

▪ 국제 동향 ③: 기업과 (기관)주주 간의 대화와 소통 강조

- 기업·기관주주 간, 경영전략, ESG 등 이슈 관련한 활발한 대화/소통 관행 보편화
- 연기금, 대형 운용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적극적 주주의 행동주의 전략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변화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 국제 동향 (2/2)

▪ 국제 동향 ④: 규제·비규제 기업이 혼합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강화

- 국제규범인 Joint Forum 통합감독 원칙(2012)은 그룹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규제(금융) · 비규제(비금융) 계열사 전반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
- 국제적으로 금산 결합 그룹의 존재 자체가 드문 상황

▪ 국제 동향 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 100% 소유가 일반적

- 지배주주의 소유 · 지배 권리가 낮아 이해상충 거래, 주주권익 훼손 가능성 최소화
- **노동자의 경영참여, 계약(유럽형), 강력한 주주소송(영미형)** 등이 이해상충을 억제하는 핵심 기제의 하나로 작용

I.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II. 상법 개정 방안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3.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II. 상법 개정 방안

❖ 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2020.8) 개요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 모회사 적격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표소송 제기 허용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 **감사(위원) 선·해임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 주주는 개별 3%
- **감사(위원) 선임 결의요건 완화 :** 전자투표 시행을 전제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의결
-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 직전 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는 규정들 삭제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 주주가 일반규정, 상장사 특례규정 중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

II. 상법 개정 방안: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4)

■ 개정안(제406조의2, 제542조의6)

-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도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용
 - ① 모회사가 비상장사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
 - ②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이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취지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자회사·모회사의 손실에 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해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책임경영을 촉진
- 비상장 자회사 등 활용한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규율 가능

II. 상법 개정 방안: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4)

▪ 재계 등

- 법인격 독립을 인정하는 현행 상법 체계와 충돌
- 투기자본 등이 상장사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 경영(권)에 대한 (소송) 위협 가능
- 모회사 적격 주주의 자회사 지분율과 자회사 적격 주주의 자회사 지분율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
이어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가 (간접) 소유한 자회사 지분율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모순 등

▪ 시민단체 등

-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사법적 수단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6개월 보유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남소 우려는 기우
- 다중대표소송을 상법상 모자회사 간에만 허용하여, 국내 기업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30% 출자 관계의 회사가 제외되고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 등

II. 상법 개정 방안: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4)

▪ 검토 (1) 다중대표소송의 의의

- 기업집단 지배주주, 계열사 경영진 등이 비상장 자회사 등 통한 사익 추구 과정에서 계열사 및 그 주주가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책임 추궁 및 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율 장치**로서 의의

▪ 검토 (2) 다중대표소송이 남소, 경영권 위협 등 우려를 낳는가?

- 주주가 직접 주식을 소유한 상장사에도 **공익소송으로서의 특성** 탓에 대표소송 제기가 드문데, 승소 시 이익이 더 작은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남용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더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모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경영권 위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대표소송도 경영권 위협수단인가?)

II. 상법 개정 방안: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4/4)

▪ 검토 (3)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주주에 차별적인가?

- 모회사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만큼 자회사 주주에도 이익이 되는 공익소송적 특성이 있어 대표소송 적격 지분율이 자회사 주주와 모회사 주주 간에 달라지는 것을 (자회사 주주에 대한) 차별로 이해해야 할지 판단 필요
- 모회사 주주는 직접 이익도 별로 없는 대표소송을 자회사 주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자?

▪ 검토 (4) 다중대표소송제의 적용 범위는?

- 다중대표소송을 모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의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 ① 상법상 자회사(지분율 50%)에 더해
 -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되기 때문)

II. 상법 개정 방안: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1/4)

■ 개정안(제542조의12)

- 최소 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의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주총에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 시 감사위원의 사외이사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는 특수 관계인을 합산해 3%, 여타 주주는 개별적으로 3% 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

■ 의의

-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 선임함으로써 주총 의결 과정에서의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보다 독립성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 가능
-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가 달라지던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일관성을 유지

II. 상법 개정 방안: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2/4)

▪ 재계 등

- 감사위원도 이사인 만큼 동일한 이사의 선임 절차를 달리하거나 구분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감사위원인) 일부 이사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
-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개별 3%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면서 이사회 장악, 경영권 위협이나 간섭 등을 시도할 가능성
-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기타 주주(개별 3%)에 비해 더 큰 최대주주(합산 3%)에 역차별

▪ 시민단체 등

-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개정안과 달리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이 적절
- 최대주주와 기타 주주 간에 의결권 행사 제한에 차이를 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 합산 3%로 의결권 행사를 일괄 제한하는 편이 타당

II. 상법 개정 방안: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3/4)

▪ 검토 (1)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고강도 회계개혁을 불러온, 국내 회계투명성에 대한 높은 불신 (가령, 2016년 IMD 조사 61/61)과 부실회계·회계부정 사례
- 감사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전문성·독립성에 대한 요구의 대폭적인 확대
- 상근감사,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안정적 시행 경험(우려할 만한 경영권 위협 등 사례 미확인) 등

II. 상법 개정 방안: 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4/4)

▪ 검토 (2)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전자투표 시행 전제) 결의요건 완화의 효과

-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여타 이사와 달리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최대주주와의 독립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여 구분 선임하려는 취지
-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투표 시행 전제 시) 감사위원 결의요건 완화 (사실상의 의사정족수를 폐지하고 의결정족수만 적용) 방안과 결합할 때 문제 소지
- 즉, 최대주주 지분율, 기타 주주의 주총 참여도 등에 따라,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결의요건(①)이 기타 이사의 결의요건(②)보다 완화되어 분리선임 취지에 역행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 필요

“의결정족수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①) < (②) “의결정족수 + 사실상의 의사정족수” (?)

(※ 의결정족수는 주총참석 주식 과반수, ‘사실상의 의사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요건 의미, 이하 동일)

▪ 검토 (3) 기타 사항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최소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현재의 개정안에 일정한 현실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의결권 제한 범위에서 최대주주와 기타 주주 간에 차이를 두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합산 3%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할 것을 검토

II. 상법 개정 방안: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1/4)

■ 개정안 (제409조, 제542조의12)

-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요건 없이) 주총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
-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 요건 삭제는 사실상 의사정족수(출석정족수) 요건 삭제와 유사

■ 취지

- 색도우 보팅 폐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결의요건 미달로 부결되는 사례**가 많아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가결을 지원
- 단, 전자투표 시행을 전제로 하여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과대표되는 문제를 완화하여 주주권한을 보호

II. 상법 개정 방안: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2/4)

▪ 검토 (1) 결의요건 미충족에 관한 세부 현황 파악이 우선!

-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사실상의 의사정족수 요건 폐지는 주총에 일반주주의 참석이 저조한 국내 현실에서 지배주주만의 주총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중할 필요
- 결의요건 미충족의 원인과 수준을 확인해야 “지배주주 그들만의 주총” 문제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나 현재 세부 현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음
- 가령 다음의 경우 다른 수단의 검토 없이 최후 수단인 결의요건 완화 추진이 적절할지 미지수
 - ① 15% 정도의 반대투표가 부결 원인인 경우
 - ② 찬성율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정도가 불과 3% 정도인 경우
 - ③ 지분율 10%인 국내 운용사/연기금의 의결권 미행사로 결의요건 미달인 경우
 - ④ 지분율 8%인 해외 운용사/연기금의 의결권 미행사로 결의요건 미달인 경우 등
- 따라서 주총 참석, 의결권 행사를 촉진해 자본시장 문화를 선진화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한 이후 필요시 결의요건 완화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

II. 상법 개정 방안: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3/4)

▪ 검토 (2) 국내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제도 개선
 - ①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련 운용사 등 이사회의 포괄적 책임을 명시(금융사지배구조법)
 - ②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에 관한 공시 범위의 대폭 확대(자본시장법)
- 국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개선을 위한 다음 조치의 시행
 - ① 국가재정법 상 의결권 직접 행사 관련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감사 및 평가
 - ② 연기금이 법·계약 상 운용사에 위임한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 여부 엄격하게 감독 및 공시

▪ 검토 (3)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촉박한 일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 기간 확대 등 추진[가령, 상장회사법 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II. 상법 개정 방안: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4/4)

■ 검토 (4) 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한 일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 전자투표 의무 시행 확대
- 의결권 행사 유인을 줄이는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 기간의 축소** (가령 현행 3월 → 2월, 상장회사법 제정안(이용우))
- 결의요건 미충족 우려를 보여주는 정보의 적시 공개를 확대해 의결권 행사를 유도 [가령 주총안건별 찬반율(주총 참석 의결권 수 대비, 주식 발행 총수 대비)]
- 개인주주의 주총 참석,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형식적인 주총 운영**(가령, 직원으로 가득찬 주총장, 자유 토론의 제약, 거수 투표 등)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

■ 검토 (5) 조건부 결의요건 완화

- 이상 검토 사항과 같은 통상적인 의결권 행사 촉진 수단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의요건 완화를 검토하되 실제 부결 발생 이후 임시 총회에서 완화하는 방안 검토 (프랑스 사례)

II. 상법 개정 방안: ③ 감사(위원) 선임 안건 결의요건 완화

<참고> 의결정족수 관련 해외 동향

■ 평가

- 최근 미국, EU 등 선진 각국은 주주의 주총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회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감사위원 결의요건 완화 논의는 이런 국제 흐름과는 거리가 있음

■ 해외의 투표율 실태와 의결정족수 규정 완화의 의미

- 미국 모범회사법 등에서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요건을 규정
- 해외의 경우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더라도 주주 중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 기관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 하므로 개인 주주의 투표율이 낮아도 전체 주주의 투표율은 대개 60~7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
- 반면, 국내의 경우 개인주주는 물론, 기관투자자 역시 법정 충실의무에도 투표율이 낮아 (**사실상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없애는 순간 주주총회는 (해외와는 달리) 지배주주와 일부 기관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큼

II. 상법 개정 방안: ④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 주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명확화

■ 개정안(제542조의6)

- 주주가 ① 회사편 일반규정에서 정한 요건, ② 상장회사 특례규정에서 정한 요건 중 선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소송, 주주제안 등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취지

- 해석상 논란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큰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주주 및 회사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대응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함

■ 검토

-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 일반규정의 내용을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하고, 주주에 관해서는 완화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주주가 보다 엄격한 회사편 일반규정 상의 요건을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에 논리상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

II. 상법 개정 방안: ⑤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삭제

■ 개정안 (제350조 제3항, 기타 해당조항 준용규정)

- 전환 등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해 그 기준일을 직전 영업연도 말일로 정한 각종 상법 규정(배당기산일 규정)을 폐지

■ 취지

- 회사가 사업연도 말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 관행을 개선

■ 검토

- 주총 내실화를 위한 ① 소집공고 기간 확대(현행 주총 2주 전 → 4주 전), ②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 기간 축소 (현행 주총 전 3월 → 2월), ③ 소집공고 시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송부 방안에 주요 반대사유가 배당기산일 규정이었던 만큼 이 규정 폐지와 함께 내실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 [앞서의 상장회사법 제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참고, 관련 상법 시행령 규정 검토]

I. 공정경제 3법 추진 현황 및 배경

II. 상법 개정 방안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2.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확대
4. 사익편취 규제 강화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2020.8) 개요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법 집행체계 개편	(전속고발제)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형벌 정비)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대상 형벌 삭제 (사인의 금지청구) 불공정거래(부당지원 제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예방 청구 허용 (자료제출 명령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 지원 위한 법원의 명령 (과징금 상향) 법위반 억지력 확보 위한 과징금 상향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신규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 형성 계열사의 해당 의결권 행사 금지 (해외 계열사 공시 확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해외 계열사 등에 관한 공시 의무화
혁신경쟁 촉진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행위제한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신고기준 보완) 매출액(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가 크면 신고의무 (정보교환 규제 강화) 암묵적 담합 규제를 위해 정보교환 담합추정 조항과 금지 행위유형 보완
기타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변호인 조력권 명시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① 지주사 행위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① 지주사의 자회사·손회사 지분율 상향

■ 개정안(제18조)

- (신설 지주회사,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 등 20→30%, 비상장 자회사등 40→50%로 상향 조정
- (기존 지주회사) 세제 혜택 축소(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 상 규율 통해 자발적 상향 유도

■ 취지

- 세제 혜택을 받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 통한 그룹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① 지주사 행위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① 지주사의 자회사·손회사 지분율 상향

▪ 재계 등

-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 증가로 지주회사 전환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 현재까지의 지주회사 유도 정책과 비교할 때 정책 일관성 미흡
- 연결납세제도 등 인센티브 활용을 통해 자발적인 지분율 상승 유도가 바람직

▪ 시민단체 등

-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에는 동의
- 기존 지주회사 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남(경제개혁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68개사가 개정된 기준에 미달)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① 지주사 행위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① 지주사의 자회사·손회사 지분율 상향

▪ 검토

-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한 부적절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뿐 아니라 **지주사의 자회사 등 지분율 높여 자회사 등 상대의 이해상충(거래) 우려를 축소할 수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개 지주회사가 자발적으로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국제적 추세와 비교할 때 부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셈**
- **지주회사 전환 시 지배주주 지분율 대폭 확대 등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 하면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한 지주회사 규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개정안 (제2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
- 상장 계열사에 한해 주요 안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허용
- 단, 계열사 간 합병은 공익법인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허용 사유에서 제외
- 단계별 시행(법 시행 2년 간 현행 유지, 이후 3년 간 30%→25%→20%→15%로 축소)

■ 현황 및 취지

- (현황) 공익법인을 대개 총수일가 등이 지배, 보유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74.1%), 고유목적 사업 위한 수입·지출 비중 30%로 저조(전체 공익법인은 약 60%)
- 상증세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경영승계, 편법적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에 악용하는 문제 완화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재계 등

-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은 대개 총수 등의 기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의 주체만 바뀌었으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기업집단 지배의 어려움 가중
- 주식 증여 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추가 주식 증여 감소 및 기존 주식 처분증가로 주로 공익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위축 우려
-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 등에 더해 과잉규제 가능성

▪ 시민단체 등

-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는 바람직
- 현재의 개정안대로라면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한계
- 실질적인 의결권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배권 위협, 공헌활동 위축 등은 과도한 우려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②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도입

▪ 검토 (1)

- 세제 혜택 등에 비추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해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투명하고 충실했는지 성찰적 평가 필요
- 세제 혜택을 토대로 하는 공익법인 출자와 의결권 행사 전면 허용은 **편법적인 지배력 행사와 경영승계를 위한 ‘영속적’ 수단**이 될 우려
- 의결권 행사 비율을 단계별로 축소해 시행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시행 여지를 확대
- 적어도 미래를 향하여 지배 유지 목적의 공익법인 대상 주식 증여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

▪ 검토 (2)

- 기업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ISO 26000(20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5)등 발표되고, 많은 해외 기업이 참여·이행 중
- 코로나 시대, 기업의 실질적 사회 공헌을 위해 **상기 국제적인 노력들이 지향하는 폭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목표**(거버넌스, 인권, 공정 관행,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보호, 불평등 완화, 책임 있는 소비·생산 등)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 방안을 고민할 시점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③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확대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③ (상출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확대

■ 개정안(제24조)

-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취지

-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므로 그와 관련 없고 부적절한 합병 비율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

■ 검토

- 해외의 경우 금융사의 엄격한 신인의무와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 등으로 금산결합 복합금융 그룹 사례 자체가 많지 않으며, (세계적 추세에 따른 중장기적 금산분리 방안 고려 필요)
- 국내 금산결합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산업자본임을 감안할 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일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간 합병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안에 타당성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③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확대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③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확대

▪ 재계 등

- 기업집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저해
- 적대적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의 어려움 가중
-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

▪ 시민단체 등

-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는 바람직
- 현재의 개정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금융보험사의 범위도 3~4개에 불과해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편이 실효성 있는 안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④ 사익편취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 ④ 사익편취 규제 강화

■ 개정안(제46조)

- 규제 대상 (공시집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 상기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

■ 취지

- 상장사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시도를 규제

■ 검토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
- 이론적으로 보면, **사익편취는 내부거래 계열사 간 총수 일가의 지분율 “차이”도 중요** 하므로 20% 미만으로 지분율을 추가로 낮춰 그러한 사익편취를 편법적으로 추구할 유인은 여전
- 지분율 차이를 사익편취 규제에 도입하고 기업집단 공시제도에도 반영하는 방안 검토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④ 사익편취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 ④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재계 등

-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한 지주회사의 경우 어려움 가중
-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 지분 매각 시 회사가치 하락 및 그로 인한 주주 손실의 우려 확대

▪ 시민단체 등

-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며, 규제대상이 현재의 200여개 계열사에서 600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 확대의 실효성이 있음
- 단, 많은 계열사(자회사 포함)가 총수 지분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한계
-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 대상 범위뿐 아니라 부당성 입증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한계

감사합니다.